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목포대학교 편입생 학력조회의회 회신		
이용 또는 제공구분	[<input type="checkbox"/>] 목적외 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기관의명칭 (목적외 이용의 경우)	연암공과대학교	담당자	소속 : 교무처
			성명 : 강우중
			전화번호 : 055-751-2014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목포대학교	담당자	소속 : 교무과
			성명 : 박신자
			전화번호 : 061-450-2021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20.03.02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엑셀파일		
이용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제18조 제2항 2호		
이용목적또는 제공받는 목적	목포대학교 편입생 학력사항 확인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적대학명, 전적학과명, 학적상태, 졸업학년, 취득학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화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2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밀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비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위탁종료시 제공받은 일제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2항 1호~9호 등 관련 근거 기술

항목	상세내용
제18조 제2항 1호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제18조 제2항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제18조 제2항 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2항 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제18조 제2항 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8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9호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